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전용기 · 윤종균
정태호 · 박용갑 · 김승원
김우영 · 이상식 · 박홍배
김한규 · 위성곤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,563개 중 27,609곳(73.5%)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‘식품사막화’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

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).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식품사막지역”이란 구역 내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, 「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등 구입이 힘들어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·면·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제11조의2에 따른 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환경 개선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 판매시설 설치
2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

3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 실시

4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

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식품사막지역의 식품등 구입 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“식품사막지역”이란 구역 내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등 구입이 힘들어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·면·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</u>
제7조(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) ① (생 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제11조의2에 따른 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 환경 개</u>

3. ~ 5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
식생활 조사) ①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영양문
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

선사업 추진계획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식품사막지역 식품등
구입환경 개선사업) ①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지역
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등
구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
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 판매
시설 설치

2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을 판
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

3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
달서비스 실시

4.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
달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에 대
한 지원

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
지원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
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한다.

제13조(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
식생활 조사) ① -----

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식품사막지역의 식품등 구입</u> <u>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